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840호 2020. 6. 10.(수)

안내문

-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10일 단위)되며 공보발행 방식이 전자식 형태로 전환되어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구청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 서구소식⇒ ‘서구공보’에서 열람
- ◇ 공보발행 절차
【원고접수마감】 매월 8일, 18일, 28일(D-2)
【편집】 접수마감 익일(D-1)
【게시】 발행일(D일)
- ◇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다음날”발행되며, 접수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게재됨으로 특별히 게재되어야 할 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고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송부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의 업무는 공보 발행 일자를 참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람									
----	--	--	--	--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

입법예고

- |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398호 | 3 |
|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399호 | 12 |

조례

- |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1호 | 19 |
|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2호 | 23 |
| ◎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3호 | 27 |
| ◎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4호 | 32 |
|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5호 | 38 |
|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6호 | 42 |
| ◎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7호 | 45 |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조례 제1228호 | 50 |

규칙

- |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80호 | 53 |
|---------------------------------|-------------------|----|

고시

- |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25호 | 59 |
|-------------------------------|-----------------------|----|

공고

- | | | |
|--|------------------------|----|
| ◎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383호 | 60 |
| ◎ 내당내서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390호 | 61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398호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임기만료 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기 만료일을 상·하반기로 일괄 조정하고, 통장 임기만료 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추가 연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공백 최소화
- 통장 복지 증대 및 보다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 통장 사기진작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통장 해촉 기준일자 지정 규정 신설
- 통장 위촉에 대한 임기 예외 규정 신설
- 통장의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지원 근거 마련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227 / 팩스 : (053)663-2219
 - 이메일 : smailim@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를 “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통·반” 을 “이 경우 통·반”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위·해촉” 을 “위·해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통관할 구역내에” 를 “통 관할 구역 내에”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통장위촉은” 을 “이 경우 통장위촉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기 전” 을 “임기 중”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통·반의 통·폐합” 을 “통·반의 통·폐합”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통·반장의” 를 “통·반장의” 로 한다.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매 임기마다 위·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년 임기 만료 시마다 통장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로, “정리” 를 “기재” 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직무교육” 을 “사기진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를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직무교육
2.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③ 구청장은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통장 및 반장에게는” 을 “설과 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장 및 반장에게는”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통장 모집 공고 중이거나 통장 모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u></p> <p>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p> <p>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u>통·반</u>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p>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생략)</p> <p>② 통·반장은 다음 <u>각호</u>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p> <p>1. 통장은 당해 <u>통관할</u>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안보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u>통장위촉</u>은 지원자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대구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u></p> <p>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p> <p>① ----- ----- ----- . <u>이</u> <u>경우 통·반</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u>의 ----- ----- .</p> <p>1. ----- <u>통 관할</u> 구역 내에 ----- ----- ----- . <u>이</u> 경우 통장위 <u>촉</u>은 ----- ----- -----</p>

- 2. (생략)
-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매 임기마다 위.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 4. (생략)
- 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 1. 임기 전 사망하거나 다른 통·반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 2. ~ 4. (생략)
 - 5.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 6. 기타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 2. (현행과 같음)
- 3.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매 임기마다 위·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년 임기 만료 시마다 통장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③ -----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 1. 임기 중 -----

- 2. ~ 4. (현행과 같음)
- 5. 통·반의 통·폐합 -----

- 6. ----- 통·반장의 -----

될 때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 9. (생략)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통·반장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제공 및 직무교육)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반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

제7조(임무) -----
----- 각 호의 -----
-----.

1. ~ 9. (현행과 같음)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
-----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 기재-----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실비변상) ① (생 략)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직무교육

2.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③ 구청장은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설과 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장 및 반장에게는 -----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⑤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 4. 1.]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399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안행정과 일반행정의 협업 업무 증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동 의장 체제로 확대 구성
-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운영 내실화

2. 주요내용

- 현 단독 의장(구청장)에서 공동의장(구청장·경찰서장)으로 개정
-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장 추가
- 정기회의 횟수 조정 :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1)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2) 전 화 : (053)663-2224 / 팩스 : (053)663-2219

3) E-mail : choihg@korea.kr

라. 참고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전화 : 053-663-22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 「[소통참여/서구소식/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건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 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 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1호” 를 “제1항제1호”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 을 “공동 의장 2명” 으로 하고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를 “각호의”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의장” 을 각각 “구청장” 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서부경찰서장” 을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반기 1회” 를 “연 1회”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부경찰서” 를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서구 총무과장, 서구의회 의정담당, 서부경찰서 경무과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을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담당,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경무과장,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 · 조정” 을 “협의 · 조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지역의 범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 -----.</p>
<p>제2조(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제2조(기능 및 역할) 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 -----.</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된다.</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 공동 의장 2명-----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p> <p>② 협의회의 의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한다.</p>

③ 당연직 위원은 서구의회 의장, 서부경찰서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부소방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의장이 위촉한다.

1. ~ 4. (생략)

⑤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제4조(협회의의 직무) ①·② (생략)

③ 협회의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부경찰서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7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대구광역시 서부소방서장으로 한다.

④ ----- 각 호의 -----
----- 구청장-----
--.

1. ~ 4. (현행과 같음)

⑤ -----
----- 구청장-----.

제4조(협회의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해촉) ----- 각호의 -----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 1회 -----

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④ (생략)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
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
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
기관인 서부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
고 당연직 위원은 서구 총무과장,
서구의회 의정담당, 서부경찰서
경무과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
지원과장, 서부소방서 소방행정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본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단체 실
무자(과장)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
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을 추진한다.

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실무협의회) ① -----

-----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

② -----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정담당,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 경무과
장,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대구광역시 서부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③ -----

협의·조정-----.

④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1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이하 “구” 라 한다) 에” 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로,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 을 “정원”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51명” 을 “대구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의 총수는 754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35명” 을 “738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동
총 계	754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752					
3급	1	1				
4급	5	3	1	1		
5급	43	18	2	5	1	17
6급 이하 계	703					
별정직 계	1					
6급 상당 이하 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효율적인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보건소 과·분리 신설 및 ‘20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국가시책 및 당면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가. 정원의 총수 : 751명 → 754명 (+3)

- 집행기관의 정원 : 735명 → 738명 (+3)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가. 총 계 : 751명 → 754명 (+3)

나. 일반직 계 : 749명 → 752명 (+3)

- 5급 계 : 42명 → 43명 (+1)

· 보건소 : 4명 → 5명 (+1)

- 6급 이하 계 : 701명 → 703명 (+2)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2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2조” 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본청” 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 으로 한다.

제4조 중 “성과통계, 규제개혁” 을 “규제성과” 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경관재생” 을 “도시정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정비” 를 “공원관리”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관리”

를 “시설, 주거정비”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난안전” 을 “재난 안전, 사회재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운영” 을 “교통특 사경”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14조” 를 “「지역보건법」 제14조” 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하되, 공중 및 식품위생업무는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 감염예방, 의약관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건강증진, 방문보건, 비원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 을 “보건행정과장” 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 을 “건강증진과장” 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1. 개정이유

건강증진과 부서 신설과 병행하여 도시안전국 부서간 담당조정을 통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기구조정 총괄
 - 구분청 : 3국 1실 17과 75담당(변동없음)
 - 직속기관 : 1보건소 1과 7담당 → 1보건소 2과 8담당(증 1과 1담당)
- 목적규정 약칭사용 삭제(안 제1조)
- 도시안전국 사무분장 조정(안 제7조)
 -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사무분장 조정
- 보건소 부서신설(안 제10조)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사무분장(신설)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3호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

을 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구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서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서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제정 내용

- 구청장 책무(안 제3조)
- 증진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위원회(안 제6조)
- 후원협력시스템 구축(안 제9조)
- 재정지원(안 제10조)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4호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① 서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 사업

가. 우수학생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나. 예술·체육·문학·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육성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발전 사업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나.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 지원사업

다.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

라. 자기주도학습 및 교육 국제화 지원사업

마. 학교의 방과 후 및 주 5일제 수업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3. 그 밖에 장학 및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하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 2. 재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 4.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역의 장학 및 교육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재단법인 서구장학회와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으로 지역 교육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 및 법인 임원들의 통합요구에 부합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명 변경

「대구광역시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변경 전)

⇒ 「대구광역시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변경 후)

○ 재단의 목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재단 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 명시(안 제2조)

- 서구장학회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과 서구교육발전위원회의 목적사업인 교육발전사업을 모두 수용하는 서구인재육성재단 사업 명시(안 제3조)

○ 재단의 임원, 재산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1조)

- 임원(이사, 감사)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구 출연금, 기부금품 등으로 함을 명시
(안 제5조)
- 사업의 타당성과 출연의 적정성 검토 후 출연하여야 함을 명시
(안 제6조)
- 공유재산 대부 및 행정지원 사항 명시(안 제7조 ~제8조)
- 재단 운영에 대한 업무지도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 ~
제10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5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 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청구인등에게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와 신청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6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을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10조 중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 ” 을 “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0.1.15.)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제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에 대해 현행조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신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안 제4조)
- 감면제외 대상에 대해 현행조례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 조문을 조례에 반영(안 제10조)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1227호

대구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감염병 발생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

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격리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의료인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등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방역대책
-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기본수칙
-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 5.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마스크착용 및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구광역시 서구·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관리를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

1. 제정이유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1조~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의료인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시행 및 교육·홍보(안 제7조~제9조)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조치(안 제10조~제11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조례 제1228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 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을” 로, “미리” 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
을” 을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구의회 의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외부강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행동강령의 명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시에만 신고토록 하고,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안 제29조제2항)
- 조례 제29조제2항의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명확화 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80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원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대구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관인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맞추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용어 변경(안 제4조, 안 제11조)
-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관련 서식 신설
 -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신설(안 제12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
 - 선정 대리인 결과 통지 신설(안 제13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신설(안 제14조 및 별지 제12호 서식)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25호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구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전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조사취지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질 거주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3. 조사기간 : 2020. 06. ~ 2020. 11.
4. 조사대상 : 서구·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5. 조사의 내용
 - 빈집여부 확인 / 빈집 소유권등의 권리관계 현황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조사
 -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빈집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 빈집의 발생사유 조사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
6. 대행전문기관 : 한국감정원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축주택과(☎053-663-29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383호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389-8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사업개요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389-8번지 일원
 - 구역면적 : 69,796.4㎡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33층, 14개동(아파트1,526세대), 부대복리시설 등
 - 사업시행자 :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허**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0. 6. 10. ~ 2020. 6. 26.(14일 이상)
- 나. 공람장소
 - 서구청 건축주택과(☎ 663-2973), 원대동 행정복지센터(☎ 663-3317)
 -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소(☎ 359-2934)

3. 주민의견 제출

- 가. 대 상 : 사업시행인가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나. 제출방법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계획(안)은 관련부서(기관)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390호

내당내서 재건축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내당내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사업개요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내당내서 재건축 정비사업
-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6,637.2㎡(정비구역 면적 : 17,691.7㎡)(변경있음)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 19층(변경있음)
 - 용 도 : 아파트 6개동 3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변경있음)
 - 사업시행자 : 내당내서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배**
 -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0개월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0. 6. 10. ~ 2020. 6. 26.(14일 이상)
- 나. 공람장소 :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53)
 내당2·3동행정복지센터(☎053-663-3302)
 내당내서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소
 (서구 평리로 416, 2층 ☎053-521-0081)

3. 주민의견 제출

- 가. 대 상 : 사업시행인가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나. 제출방법 :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계획(안)은 관련부서(기관)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